

2022년도 보조금 지급사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안내

1) 접수기간 : 2022. 1. 20.(목) 09:00 ~ 재원 소진 시까지

- ▶ 재원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 지원
- ▶ 재원 소진 시 접수 마감 (별도 공지)
- ▶ 필요 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 ※ [덧붙임]의 「'22년 보조금 지급사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일체 [붙임2 참조]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주소 : (50635)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 ※ 신청서류 미비 및 이전 양식일 경우 신청서 반려 예정
-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 ☎ 055-371-7562

3)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고소작업대 임차료에 한함)
-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에 한함)
 -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불가(단, 융자금 결정 취소 후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4)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자금결정일 기준 연 2회 이내로 제한
 -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은 차대번호로 구분, 동일 설비 중복지원 불가
- ▶ 보조비율 및 지원조건
 - (보조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원조건) 안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련법에 따른 조건 충족 시

5)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 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방호덮개, 울, 롤러기안전장치, 컨베이어 안전장치)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설비 주요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지원,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 안전인증제도 시행('09.01.01.) 이전에 제작된 것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기동·벽체 등 건물의 보수·보강비용은 지원 불가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자동화시스템 등)에도 적용가능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동시설치 조건)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 지게차 임대업 사업주는 임대업장(출차대기장소 등) 내에서 작업하거나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행·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지게차 등록차량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 (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납세자(사업주)가 해당 지게차 관련 세금납부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된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제출
-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 안전블록세트 및 채광창안전덮개는 건설업 등록증 보유사업장에 한함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 포함 원격제어기 등)
 - ※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장치 모두 설치되는 조건으로 지원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 (건설업본사)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20kg ABC분말 대형소화기,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형),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이동식),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이동식)
 - (제조·서비스) 방폭전기기계기구(방폭인증품), 건축물내화도장공사,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고정식),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 및 덕트, 이동식포소화설비,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 개선 전·후 작업환경측정 측정결과 확인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 MSDS를 확인하되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한하며, 투자완료시 작업환경측정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실적이 있는 건설업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장에 한함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냉·난방시설)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덧붙임]

22년 보조금 지급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60점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	25점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참고 1 참조]
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	10점	단, 재해율 순위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 [참고 2 참조]
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근로자 1명당 2점) *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15~29세이하)	10점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자율활동 우수항목	40점	
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⑦일터혁신 우수 기업(인증)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⑨산학협력 우수기업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	10점	각 5점씩 ->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 시 최대10점으로 한정
⑦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10점	'21~'22년 참여업체
⑧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20점	
■ 가점항목(사망사고 감소사업, 고용·산업위기지역)	+30점	
⑨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10점	공단 전산확인 (제출서류 없음)
⑩ 고용위기 지역 • '21년~'22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0점	경남동부 관할 해당없음
⑪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10점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계		

※ 당해연도 용자금 결정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불가

(단, 용자금 결정 취소 후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참고1】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 배정 점수

업종(소)	점수	업종(소)	점수
기계화농업	25	기계장치공사	15
토사채굴·채취업	25	원동기제조업	15
벌목업	25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15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25	창고업	15
동·식물유지제조업	25	강선건조또는수리업	15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25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15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25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15
제빙업	25	석유정제품제조업	10
석회제조업	25	기타각종제조업	10
쇄석채취업	25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10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25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10
철강압연업	25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10
도로신설공사	25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10
퀵서비스업	25	용융도금업	10
양식어업	25	자동차에의한여객운수업	10
수상운수업	25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10
시멘트제조업	25	축산업	10
특수화물운수업	20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10
구역화물운수업	20	합성수지제조업	10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20	도정및제분업	10
종묘생산업	20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0
석재및석공품제조업	20	임대업	10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0	음료제조업	10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20	농업서비스업	10
섬유기계제조업	20	의복및장신품등의제조업	10
노선화물운수업	20	무기화학제품제조업	10
기타건설공사	20	개인및가사서비스업	5
화학비료제조업	20	자동차제조업	5
각종운수부대사업	2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5
건설기계관리사업	20	영림업	5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0	코팅사업	5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15	운수부대서비스업	5
도자기제조업	15	택시및경차량운수업	5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및제염업	15	일상생활용전기기구기구제조업	5
동력용전기기구기구제조업	15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5
유리제품가공업	15	유기화학제품제조업	5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15	육상화물취급업	5
작물생산업	15	수산식품제조업	5
제강압연업	15	택배업	5
항만내의육상하역업	15	자동차부분품제조업	5
건축건설공사	15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5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및설비품제조업	15	항공운수업	5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5	금속가공기계제조업	5
위생및유사서비스업	15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5
열처리사업	15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	5
소형화물운수업	15	해외파견자	5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5	그 외 업종	0
방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	15		

【참고2】 경남동부지사 관할 재해다발 위험업종 배정 점수

업종(소)	점수	업종(소)	점수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10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5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10	하수도업	5
퀵서비스업	10	선재제품제조업	5
측량기계기구제조업	10	빻및과자류제조업	5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10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5
일반제재업	10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5
철강압연업	10	골판지및종이용기제조업	5
수공구제조업	10	동력용전기기구제조업	5
각종운수부대사업	10	농업서비스업	5
작물생산업	10	항공기제조또는수리업	5
기타유리제품제조업	9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4
화학비료제조업	9	쇄석채취업	4
축산업	9	지류가공제품제조업	4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9	통신업	4
목재건구제조업	9	위생및유사서비스업	4
목상자,목통류및목용기제조업	9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4
임대업	9	섬유기계제조업	4
신문업	9	타일제조업	4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9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4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품제조업	9	유기화학제품제조업	4
판유리제조업	8	합성수지제조업	3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8	기타각종제조업	3
구역화물운수업	8	목재가구제조업	3
택배업	8	건축건설공사	3
동·식물유지제조업	8	철도·궤도운수업	3
도자기제조업	8	철도차량제조또는수리업	3
강선건조또는수리업	8	지류제조업	3
노선화물운수업	8	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	3
유리제품가공업	8	기타식품제조업	3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8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3
특수화물운수업	7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및설비제품제조업	2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7	의료기계기구제조업	2
제강압연업	7	석유정제품제조업	2
자동차제조업	7	방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	2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7	전기계측기제조업	2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7	음식및숙박업	2
열처리사업	7	코팅사업	2
소화기및분사기제조업	7	소형화물운수업	2
기타건설공사	7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
금형제조업	7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2
건설기계관리사업	6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1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6	육상화물취급업	1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및제염업	6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1
무기화학제품제조업	6	금속가공기계제조업	1
석재및석공품제조업	6	화학섬유제조업	1
양철관또는도금판제품제조업	6	직물업	1
용융도금업	6	광학기계기구또는렌즈제조업	1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	6	운동용구제조업	1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6	자동차부분품제조업	1
양식기,칼,수공구또는일반금물제조업	6	수의사업	1
그 외 업종			0